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1. 26.

복지문화위원회

의안 번호	449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1. 04. 강남구청장(어르신복지과)

나. 상정의결

-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2024. 11. 26.)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복지생활국장 : 오선미)

가. 제안이유

- 강남구 추모의 집 최초 사용 기간연장 가능 기간연장 가능 횟수를 개정하여 추모의 집 이용 활성화 및 구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최초 사용 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함(안 제6조 및 별표2)
- 종전의 3회였던 연장 가능 횟수를 1회로 변경함(안 제6조)
- 맞춤법 및 띄어쓰기 정리 등 단순 조문 정비함(조문)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기획예산과, 가족정책과, 감사담당관
-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4. 10. 4.~2024. 10.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미영)

- 본 건은 강남구 장사시설(추모의 집)의 최초 사용기간과 연장 기간, 연장 가능 횟수를 변경하고 그 밖의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음.
- 강남구 추모의 집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음.

봉안시설 운영 현황

- 시 설 명 : 강남구 추모의 집
- 소 재 지 : 충북 음성군 금왕읍 덕금로 936-61 예은추모공원
- 운영방법 : 2021.9. 관리운영 협약 체결(강남구-예은추모공원)
 <강남구> 사용(기간연장) 허가처리, 사용료 세외수입 처리, 시설물유지관리 등
 <예은추모공원> 운영 및 사용관리

분양(매매) 계약 내용

- 매 입 일 : 2005년 6월 22일
- 면적지분 : 16.4%
 - 토 지 : 1,751.35㎡ (총 부지 10,679㎡의 16.4%)
 - 건 축 물 : 609.36㎡ (총 연면적 3,715.64㎡의 16.4%)
- 매입금액 : 1,857,792,000원 (354,000원×5,248기)
- 분양기수 : 5,248기

(2024.10.25. 기준)

매입기수				실 안치기수		
계	부부단 (개방형)	개인단		계	부부단	개인단
		개방형	폐쇄형			
5,248	1,216	3,760	272	586	178	408

□ 2024년 강남구 추모의 집 신청 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합계
신규 (연장)	4(4)	7	4(1)	4	2(1)	5(3)	5(1)	5(1)	3	6	45

(출처: 어르신복지과 자료 재구성)

-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6조(장사시설의 사용기간) 및 안 별표 2(장사시설 사용료 부과·징수기준)의 개정 내용은 ① 동일한 사용요금으로 강남구 추모의 집 최초 사용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
② 연장 사용기간을 5년 단위로 3회(1회당 70,000원)까지 할 수 있던 것을 한 차례에 한정하되, 그 기간은 최초 사용기간 20년을 포함하여 총 30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최초	일반주민 - 제8조제1항제1호 중 강남구에 주민 등록을 둔 사람의 직계 존·비속 -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5년 300,000원	20년 300,000원
	일반주민 - 제8조제1항제1호 중 강남구에 주민 등록을 둔 사람 및 배우자 - 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15년 200,000원	20년 200,000원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용료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	15년 50,000원	20년 50,000원

연장 사*	일반주민	5년 70,000원	70,000원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용료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	5년 20,000원	20,000원

* 연장 관련

(현 행) 5년씩 3회 연장 가능, 1회 50,000원

(개정안) 1회 연장 가능, 최초 사용기간 20년 포함하여 최대 30년 사용 가능

- 사용 금액이 가장 높은 “일반주민(제8조제1항제1호 중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직계 존·비속,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을 기준으로 총 30년 사용을 가정해 보면,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현행 대비 사용료가 △27.45% 인하된다고 볼 수 있음.
 현 행: 총 51만원/최초 30만원(15년)+연장 21만원(5년씩 3회, 1회당 7만원)
 개정안: 총 37만원/최초 30만원(20년)+연장 7만원(1회, 10년)

- 즉, 본 건은 최초 사용기간 확대 및 연장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용료 인하 효과를 도모하여 추모의 집 이용 활성화와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이므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보임.

- 다만, 현행 사용료는 2005. 9. 30. 조례 제정 당시 사용료¹⁾와 동일하고, 2017. 3. 3. 조례 개정으로 사용자 자격을 강남구 공무원과 강남구에 소재한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까지 확대하였음에도 2024년 10월 25일 기준 매입기수 5,248기 중 586기만 신청사용 중이어서 안치율이 매우 저조함.

- 이는 추모의 집 이용률 저조의 원인이 단순히 비용적인 면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모의 집 사업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할 필요성은 있어 보임.

- 한편, 한 문장에 여러 내용을 규정할 경우 해석상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1) 2005. 9 30. 조례 제정 당시 사용료 규정
 [별표 2]

장사시설 사용료 부과.징수기준(제13조 관련)

(단위 : 원)

법문의 간결성을 위하여 안 제6조제2항은 전단과 후단을 구분하여 명시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이에 대한 수정의견은 다음과 같음.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6조(장사시설의 사용기간) ② 장사시설의 사용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때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제1항의 기간을 포함하여 총 30년으로 한다.	제6조(장사시설의 사용기간) ② 장사시설의 사용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제1항의 기간을 포함하여 총 30년으로 한다.

- 또한 부칙은 본칙과 마찬가지로 “조”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나 개정안에는 “제1항”, “제2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제1조”, “제2조”로 수정이 필요함.
- 부칙 안 제2항(제2조로 수정 필요)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30년을 총 사용기간으로 하여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용기간에 대한 특례를 두었음.
 - 특례는 구 자치법규에 따르는 것도 아니면서 신 자치법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 두는 것으로, 추모의 집 사용 연장 제도와 관련하여 조례 개정으로 인한 혜택을 기존 연장 사용자에게도 적용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구 분	내 용	사용요금
최 초 (15년)	일반주민(제8조제1항제2호)	300,000
	일반주민(제8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 경우)	200,000
	국가유공자	50,000
	독립유공자	50,000
연장시 (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50,000
	일반주민	70,000
	국가유공자	20,000
	독립유공자	20,00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00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 현황에 대해서는 부서에 설명이 필요해 보임.

- 경미한 수정사항으로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제6조제2항”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으로 수정이 필요함. 부칙 관련 수정의견은 다음과 같음.

개 정 안	수 정 의 견
부 칙	부 칙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사용기간에 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30년을 총 사용기간으로 하여 연장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2조(사용기간에 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30년을 총 사용기간으로 하여 연장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그 밖의 사항은 단순 띄어쓰기나 문장 부호를 단순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449호

제안일자 : 2024.11.26.

제안자 : 복지문화위원장

1. 수정이유

- 법문의 간결성을 위하여 전단과 후단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함
-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맞게 부칙을 수정함

2. 수정주요내용

- 조문 정비(안 제6조제2항)
- 부칙을 “항” 에서 “조” 로 구분하여 작성(안 부칙 제1조, 제2조)

강남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2항 중 “있고, 이때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제1항의 기간을 포함하여 총 30년으로 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제1항의 기간을 포함하여 총 30년으로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 제2조(사용기간에 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30년을 총 사용기간으로 하여 연장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6조(장사시설의 사용 기간) ①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연장기간은 5년 단위로 하고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사용료 등에 반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는 제14조, 제14조의2, 별표 2,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6조(장사시설의 사용 기간) ① ----- <u>최초 사용기간은 20년</u>-----.</p> <p>② 장사시설의 사용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때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최대기간은 제1항의 기간을 포함하여 총 30년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항(사용기간에 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따라 30년을 총 사용기간으로 하여 연장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p>	<p>제6조(장사시설의 사용 기간)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장사시설의 사용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제1항의 기간을 포함하여 총 30년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사용기간에 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30년을 총 사용기간으로 하여 연장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p>

강남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1조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으로, “구립”을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장사시설“이란”을 ““장사시설”이란”으로, ““강남구””를 ““강남구””로 한다.

안 제5조제3항 중 “구립 장사시설”을 “장사시설”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사용기간은 15년”을 “최초 사용기간은 2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장사시설의 사용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제1항의 기간을 포함하여 총 30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기존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 제10조제3항 전단 중 “아니할”을 “않는”으로 한다.

안 제12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안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별표 2를 별지와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기간에 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30년을 총 사용기간으로 하여 연장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별표 2]

장사시설 사용료 부과·징수기준 (제1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내 용	사용요금	비고
최 초 (20년)	일반주민 - 제8조제1항제1호 중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직계 존·비속 -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00,000	
	일반주민 - 제8조제1항제1호 중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및 배우자 - 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00,000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용료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	50,000	
연장시	일반주민	70,000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용료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	20,000	

주)부부단 : 일반사용요금의 2배

※관리비 : 장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 자와 위탁협약 체결 시 결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구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 ----- 서울특별시 강남구 ----- -----.</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p>
<p>1. “장사시설 “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 강남구” 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봉안시설을 말한다.</p>	<p>1. “장사시설” 이란 ----- ----- “강남구” ----- -----.</p>
<p>제5조(장사시설의 사용허가) ① · ② (생략) ③ 구청장은 구립 장사시설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을 정할 수 있다.</p>	<p>제5조(장사시설의 사용허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장사시설----- -----.</p>
<p>제6조(장사시설의 사용기간) ①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하여</p>	<p>제6조(장사시설의 사용기간) ① ----- ----- 최초 사용기간은 20년 ----- -----.</p> <p>② 장사시설의 사용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사시설</p>

야 하며 연장기간은 5년 단위로 하고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수거 및 개장)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안 할 때에는 해당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때에는 일정기간 공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원상회복 및 실비변상) 사용자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장사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해당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재해 또는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을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제1항의 기간을 포함하여 총 30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기존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거 및 개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않는 -----

-----.

제12조(원상회복 및 실비변상) --

----- 예외로
한다.

아니하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강남구 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의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생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3. ~ 7. (생략)
- ②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등에 반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는 제14조, 제14조의2, 별표 2,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

--.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3. ~ 7.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기간에 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30년을 총 사용기간으로 하여 연장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신 · 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장사시설 사용료 부과·징수기준 (제13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2] 장사시설 사용료 부과·징수기준 (제13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내 용	사용요금	비고	구분	내 용	사용요금	비고
최 초 (15년)	일반주민 - 제8조제1항제1호 중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직계 존·비속 -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00,000		최 초 (20년)	일반주민 - 제8조제1항제1호 중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직계 존·비속 -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00,000	
	일반주민 - 제8조제1항제1호 중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및 배우자 - 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00,000			일반주민 - 제8조제1항제1호 중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및 배우자 - 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00,000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용료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	50,000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용료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	50,000	
연장시 (5년)	일반주민	70,000		연장시	일반주민	70,000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용료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	20,000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용료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	20,000	
주)부부단 : 일반사용요금의 2배 ※관리비 : 장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 자와 위탁협약 체결 시 결정				주)부부단 : 일반사용요금의 2배 ※관리비 : 장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 자와 위탁협약 체결 시 결정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추모의 집 사용 기간, 연장 가능 횟수 및 단순 조문 변경 사항으로 비용추계 불필요

4. 작성자

- 어르신복지과 행정9급 성명 박예지(02-3423-5918)